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1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김용민·김동아・황정아

강유정 • 한준호 • 임미애

주철현 · 서영석 · 이성윤

민형배 • 박지원 • 서미화

김 현 • 전현희 • 장경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원이 복수인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도 당해 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향후 관할법원 문제를 우려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한수사가 생명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관할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1조의2(관할의 특례) ① 제14
	조 내지 제14조의2의 각 범죄
	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
	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
	런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
	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u>기준지로 본다.</u>